

- ♣ 근로복지공단 (kcomwel.or.kr) - (1) 산재보험 , (2) 고용보험
가입대상 : <https://www.kcomwel.or.kr/kcomwel/paym/join/targ.jsp>
- ♣ (3) 국민연금 (nps.or.kr)
가입대상 : 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info/easy/easy_02_03.jsp
- ♣ (4) 건강보험 (nhis.or.kr)
가입대상 : https://minwon.nhis.or.kr/menu/retrieveMenuSet.xx?menuId=MENU_WBMAA02

(1)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

- ① 「공무원재해보상법」 또는 「군인연금법」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
- ② 「선원법」, 「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」 또는 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」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
- ③ 가구내 고용활동
- ④ 농업·임업(벌목업 제외)·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

(2)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[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(적용 범위)]

- ① 농업·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
- ②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,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업자,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른 공사업자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,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
가.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
나.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고용·산재보험의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2018.7.1.이후 산재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·시행되면서 산재보험은 그 적용대상이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됨.

♣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[고용보험법 제10조 (적용제외),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(적용 제외 근로자)]

- ①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(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)
-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(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) 다만,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“일용근로자”는 적용대상임
※ 「고용보험법」 제2조제6호에 따라 “일용근로자”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.
- ③ 외국인근로자 [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]
- ④ 「별정우체국법」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
- ⑤ 「국가공무원법」과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.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,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 사업에 한함)에 가입할 수 있음
- ⑥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의 적용을 받는 자

선 우 회 계 법 인

(우 31106)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3, 6층 (두정동, 통계청사거리)
TEL : 041) 567 - 6764 | FAX : 041) 567 - 7996

copywriter Ju Hwang-kyu.

공인회계사 주 홍 선 허 철 회
세 무 사 김 수 남 윤 기 정

 근로내용 확인신고
(<http://total.kcomwel.or.kr/>)

♣ **근로내용 확인신고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)**

- 신고Web :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
사업장 > 민원접수/신고 > 자격관리 > 근로내용 확인신고(10506)
- 신고기한 : **귀속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**

① 이 서식은 **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**를 위한 서식입니다.

- “일용근로자”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(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“정의”)
- 일당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자 또는 1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근로자 고용(종료)신고(클릭하면 바로 이동)를 하셔야 합니다.

※ 고용보험가입 제외

- ☞ **65세 이후에 고용된 자** (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)
- ☞ **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** (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)
다만,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“**일용근로자**”는 적용대상임

② 건설업(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)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,
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.

- 건설업 및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나 근로자 고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 고용보험만 신고대상 입니다.

③ 건설업(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)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“임금총액”만 적고,
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“보수총액(과세소득)”과 “임금총액(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)”을 모두 적습니다.

④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「고용보험법」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.

⑤ 사업주는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(건설공사별)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·신고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♣ 가. 보험가입자의 범위

- 산재 및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은 보험가입자(사업주)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, 개인의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함
 - 이때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되고,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가입자가 됨

♣ 나.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

- 건설업에 있어서 도급계약 형식으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**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최초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임**
- 하수급이 보험 가입자가 되는 경우
 -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그 최초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 임
 -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승인하는 때에는 그 하수급인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임

♣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 요건 및 절차

(1) 승인요건 (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)

- 건설업에만함
- 하수급인 사업주가 건설사업자, 주택건설사업자, 전기공사사업자, 정보통신공사사업자, 소방시설업자, 문화재수리업자일 것(**종목별 면허 보유 필수임**)
-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,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를 제출
 - ※ 다만, 다음의 ①, ② 사유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신청은 승인 불가임
 - ① 하도급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
 - ②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

(2) 구비서류 : 도급계약서 사본 1부,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

♣ 주의 !

원수급인이 “하수급인명세서” 신청을 “하수급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”로 잘못 알고 착오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

〈하수급인명세서 및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 비교〉

구 분	보험	용도	구비서류	제출기한
하수급인명세서	고용	피보험자신고용	· 하도급계약서	하도급계약 14일 이내 (원수급인 제출)
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승인신청서	고용 산재	보험가입자 및 납부의무자 변경	· 하도급계약서 ·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	하도급 착공후 30일 이내 (원수급인 신청)

(3) 국민연금 적용제외되는 경우 [국민연금법 제6조 (가입대상)]

- ①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(60세가 될때)인 사용자 및 근로자.
다만,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.7.29.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,
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.
- ②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
타공적연금 가입자
- ③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.(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)
다만,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,
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을 근로자에 포함

※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(2018.8.1.시행)

- 건설 일용근로자 : 1개월 이상, 월 8일 이상*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
- 일반 일용근로자 : 1개월 이상, 월 8일 이상*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
사업장가입자로 적용

* (유의사항)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,
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“1일” 근로한 경우로 산정

- ④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
- ⑤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(주당 평균 15시간) 미만인 단시간근로자.
다만,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

가.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
강사

나.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
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

다.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
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
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

※ “2020.7.1.”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“생업 목적” 이 삭제되었습니다.

- ⑥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
- ⑦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
(다만,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)

(4-1) 건강보험 적용

- ①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
- ②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

(4-2) 건강보험 적용제외 사업장

- ①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
- ②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**개인사업장**(★최초 직원 가입시 대표자도 건강·연금 직장 가입★)
 - *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.
 - 단,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무보수 법인대표자 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함.
 - ※ 6개월 미만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: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
 - ※ 6개월 이상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: 정관, 규정, 조례, 이사회회의록 제출(법인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)

(4-3) 적용제외 근로자

- ① **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**(국민건강보험법 제6조, 시행령 제9조)
- ②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,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
 - 비상근 근로자 또는 **1개월 동안의 소정(所定)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**
 -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

(4-4)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적용

- ①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, 월 8일 이상 근로제공
 -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,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직장가입자로 적용
 - 1개월 이상 근로 : 최초 근로(고용)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,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
 - 월 8일 이상 근로 : 최초 근로(고용)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,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
- ② 시행일자: 2018.8.1. 부터
- ③ 적용예(경과조치)
 - 개정 지침 시행일(2018.8.1)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종전 기준을 2020.7.31.까지 적용

- ☞ 고용·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: <http://total.kcomwel.or.kr> (근로내용 확인 신고)
- ☞ 국민연금 EDI : <https://edi.nps.or.kr/> (건설업 일용근로자 다음달 5일까지 신고)
- ☞ 건강보험 EDI : <https://edi.nhis.or.kr/> (건설업 일용근로자 다음달 5일까지 신고)

(<http://cafe.daum.net/transtax/FWkz/185>)

(1) 국민연금보험 (<https://www.nps.or.kr/>) - 9% (4.5%+4.5%)
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info/easy/easy_03_01.jsp

① 연금보험료 =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(9% : 사용자 4.5%, 근로자 4.5%)

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

- 2020.7.1. ~ 2021.6.30.까지 적용할 최저 · 최고 기준소득월액 각각 32만원과 503만원
- 2021.7.1. ~ 2022.6.30.까지 적용할 최저 · 최고 기준소득월액 각각 33만원과 524만원

③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

-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: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, 입사(복직)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
-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 :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

(2) 국민건강보험 (<https://www.nhis.or.kr/>) - 7.353675%(3.6768375%)
https://minwon.nhis.or.kr/menu/retrieveMenuSet.xx?menuId=MENU_WBMAB02

① 보수월액 보험료

-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,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

② 소득월액 보험료

-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(보수외소득)이 연간 3,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(2018. 7. 1. 시행)

※ 2012. 9. 1.~2018. 6. 30. : 연간 7,200만원 초과

③ 보수월액보험료(2021년도 기준) 7.650272% = 6.86% + 0.790272%

- 건강보험료 = 보수월액 x 보험료율 (6.86%=근로자 3.43%+사용자 3.43%)
- 장기요양보험료 =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(11.52%)

④ 소득월액보험료(2021년 기준)

- 건강보험료 = (연간 보수외소득 - 3,400만원) ÷ 12월 × 소득평가율 × 건강보험료율(6.86%)

1. (연간 보수외소득 - 3,400만원) ÷ 12월 = 소득월액

2. (소득월액 × 소득평가율) × 건강보험료율 = 소득월액보험료

※ 소득평가율 : 사업 · 이자 · 배당 · 기타소득(100%), 연금 · 근로소득(30%)

※ 2018.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: 연간 보수외소득 × 소득평가율 ÷ 12월 × 건강보험료율 × 50/100

- 장기요양보험료 =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(11.52%)

⑤ 월별 보험료 상한액 : 102,739,068원 , 월별 보험료 하한액 : 279,300원

(<http://cafe.daum.net/transtax/FWkz/185>)

(1) 국민연금보험 (<https://www.nps.or.kr/>) - 9% (4.5%+4.5%)
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info/easy/easy_03_01.jsp

① 연금보험료 =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(9% : 사용자 4.5%, 근로자 4.5%)

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

- 2020.7.1. ~ 2021.6.30.까지 적용할 최저 · 최고 기준소득월액 각각 32만원과 503만원
- 2021.7.1. ~ 2022.6.30.까지 적용할 최저 · 최고 기준소득월액 각각 33만원과 524만원

③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

-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: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, 입사(복직)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
-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 :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

(2) 국민건강보험 (<https://www.nhis.or.kr/>) - 7.353675%(3.6768375%)
https://minwon.nhis.or.kr/menu/retrieveMenuSet.xx?menuId=MENU_WBMAB02

① 보수월액 보험료

-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,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

② 소득월액 보험료

-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(보수외소득)이 연간 3,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(2018. 7. 1. 시행)

※ 2012. 9. 1.~2018. 6. 30. : 연간 7,200만원 초과

③ 보수월액보험료(2021년도 기준) 7.650272% = 6.86% + 0.790272%

- 건강보험료 = 보수월액 x 보험료율 (6.86%=근로자 3.43%+사용자 3.43%)
- 장기요양보험료 =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(11.52%)

④ 소득월액보험료(2021년 기준)

- 건강보험료 = (연간 보수외소득 - 3,400만원) ÷ 12월 × 소득평가율 × 건강보험료율(6.86%)

1. (연간 보수외소득 - 3,400만원) ÷ 12월 = 소득월액

2. (소득월액 × 소득평가율) × 건강보험료율 = 소득월액보험료

※ 소득평가율 : 사업 · 이자 · 배당 · 기타소득(100%), 연금 · 근로소득(30%)

※ 2018.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: 연간 보수외소득 × 소득평가율 ÷ 12월 × 건강보험료율 × 50/100

- 장기요양보험료 =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(11.52%)

⑤ 월별 보험료 상한액 : 102,739,068원 , 월별 보험료 하한액 : 279,300원

(<https://www.kcomwel.or.kr/kcomwel/paym/join/docs.jsp>)

(3) 고용보험 (<https://www.kcomwel.or.kr/>) - 1.85% (1.05%+0.8%)
<https://www.kcomwel.or.kr/kcomwel/paym/paym/tari.jsp>

① 고용보험료 = 보수 x 고용보험료율 (1.85% : 사업주 1.05%, 근로자 0.8%)

·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

구 분		2019.10.1. 부터	
		사업주	근로자
실업급여		0.8%	0.8%
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	150인 미만 기업	0.25%	
	150인 이상 (우선지원대상기업)	0.45%	
	150인 이상 (우선지원대상기업)	0.65%	
	1000인 이상 기업, 국가 · 지방자치단체	0.85%	
계(150인 미만 기업) 1.85%		1.05%	0.8%

※ 2019.10.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료율이 인상(13/1000 ⇒ 16/1000)

②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

· <https://www.kcomwel.or.kr/kcomwel/paym/paym/tari.jsp>

(4) 산재보험 (<https://www.kcomwel.or.kr/>) - 사업주 전액부담

· <https://www.kcomwel.or.kr/kcomwel/paym/paym/tari.jsp>

- 산재보험료 = 보수 x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(0.73% ~ 18.63%)

· 건설업 : 3.73% / 사업서비스 : 0.95% / 도소매 · 음식 · 숙박업 : 0.93%

· 임금채권부담금 : 0.06% · 석면피해구제분담금 : 0.003%

(5) 건설업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(관리번호 뒷자리 0번 본사, 6번은 건설일괄사업장)

(실제 지급보수의 확인이 불가능 할때에 적용)

· <https://www.kcomwel.or.kr/kcomwel/paym/paym/rept/calc.jsp>

· 매년 3.31까지(년도중 보험관계 성립시 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)보험료신고서를 작성,
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제출

· 개산보험료 = 총공사금액 × 노무비율 × (고용 · 산재)보험료율

· 확정보험료 = 「직영인건비+(외주비×하도급노무비율)」 × (고용 · 산재)보험료율

※ 외주비 중(中)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된 공사금액은 제외

※ 건설업 요율 : 노무비율(건설업 노무비율 27%, 하도급 노무비율 30%), 월평균보수(4,330,442원),
최저임금 및 기준보수,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,
임금채권보장기금과 석면분담금 비율